

[] 공항시설 [] 휴지 [] 승인신청서
[] 비행장시설 사용 [] 폐지
[] 항행안전시설 [] 재개 [] 신고서

※ 색상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(신고인)이 작성하지 않으며, []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시	처리기간 15일 (단, 승인 사항은 30일)
신청인 (신고인)	성명(대표자)	생년월일(법인등록번호)
	주소 (전화번호 :)	
명 칭		
위 치		

휴지·폐지·사용 재개 일시

「공항시설법」 제33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 및 제49조제1항·제2항, 같은 법 시행규칙 제21조제1항·

제3항·제5항 및 제41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

[] 공항시설 [] 휴지 [] 승인신청서
[] 비행장시설 사용 [] 폐지 에 관한 를 제출합니다.
[] 항행안전시설 [] 재개 [] 신고서

년 월 일

제출인

(서명 또는 인)

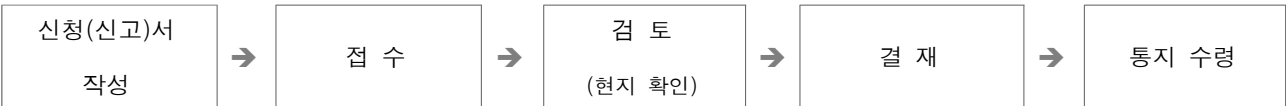
지방항공청장

귀하

항공교통본부장

신청(신고)인 제출서류	1. 휴지 또는 폐지하려는 경우: 해당 시설의 내용, 그 사유 및 기간을 적은 서류 2. 재개하려는 경우: 해당 시설의 내용, 재개 사유 및 시기를 적은 서류	수수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등기사항증명서(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	없음

처리절차



신청(신고)인

처리기관: 지방항공청, 항공교통본부

신청(신고)인